

수수료(제27조 관련)

1. 영업의 신고·변경신고 등

가. 영업신고: 28,000원

나. 변경신고

- 1) 영업소 소재지 변경: 20,000원
- 2) 영업소 소재지 외 변경: 9,000원(영업자 성명 변경은 수수료를 면제한다)
- 3) 영업소 소재지 및 소재지 외 사항을 함께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.

다.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: 9,000원

- 1)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함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만 적용한다.

라. 영업의 신고·변경신고 등 수수료의 면제

- 1)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자사제품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·변경신고 등을 하려는 경우
- 2)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

2.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

가. 검사수수료: 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하는 시험·검사수수료에 따른다. 다만, 수입신고인이 위생용품 시험·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·검사기관이 정한 검사수수료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따른다.

나. 검사수수료의 면제

- 1) 별표 3에 따른 현장검사 결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
- 2)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위생용품(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3) 국내외 위생용품 관련 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